

[일련번호 : 14]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제출서류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에는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과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또는 법원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등을 규정하고 있고 비고 3번 증명자료로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는 주소보정명령서의 경우 ‘열람용’을 출력한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송 등의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자는 제출서류와 함께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나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위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 반송된 내용증명 관련 사항으로 반송된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을 “반환 불필요”로 송부한 이후 여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 ‘보관’(보관중 불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등기 우편 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아래 표와 같이 서류 확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위임장 기재사항 소홀 내역

연번	발급일시	이해관계	지적사항
1	2022.03.03.	금융기관 채권채무	- 반송된 내용증명이 국내 등기우편 조회결과 최종결과가 ‘보관’이 아님에도 서류발급
2	2023.04.13.	금융기관 채권채무	- 반송된 내용증명이 국내 등기우편 조회결과 최종결과가 ‘보관’이 아님에도 서류발급
3	2023.04.14.	소송	- 소송사건 관련 초본발급 시 당사자 위임을 받아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7호서식과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별지9호서식에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
4	2024.09.02.	소송	- 주소보정명령 서류를 열람용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접수하여 초본을 교부함
5	2024.09.20.	금융기관 채권채무	-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직인이 기관의 장(지점의 경우 지점장)이어야 함에도 ‘채권관리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6	2024.09.25.	소송	- 주소보정명령 서류를 열람용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접수하여 초본을 교부함
7	2024.09.25.	소송	- 주소보정명령 서류를 열람용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접수하여 초본을 교부함
8	2024.09.27.	개인위임(9호)	- 신청인 서명 누락
9	2024.09.27.	소송	- 서면위임장에 날인 누락
10	2024.09.30.	소송	- 소송사건 관련 초본발급 시 당사자 위임을 받아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7호서식과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별지9호서식에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